

과학기술기본법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정 방향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종민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걸쳐 개정된 바 있으나, 변화된 시대 및 환경에 적합한 정책 총괄규범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합리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기본법의 전반적인 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여 명실상부한 국가의 과학기술 기본규범이자 총괄규범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정책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의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 법제의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율체계와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개정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의 전체적인 규정체계를 검토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법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국내외의 유관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법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기본법에 규정하기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별도로 분법하거나 관계 법률로 이관하는 등의 기본법에 걸 맞는 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과학기술 총괄규범에 걸맞게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범위를 모두 포괄하도록 규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국가사회적인 현안해결 및 국민 삶의 질의 제고 등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강화에 따른 규정의 신설방안 및 나아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관련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창조경제 등 시대흐름에 맞는 국가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추진의 법적 기반을 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과학기술에 관한 세부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국가의 과학기술목표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법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과학기술기본법, 법제 개편 방안, 과학기술과 법, 과학기술 총괄규범, 창조경제와 과학기술법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과학기술 법체계
